

아동 대상 성범죄자, 친족 성범죄자 그리고 강간범 간의 특성 비교: 인구통계적 변인과 범죄 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고 려 진 이 수 정†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우 흉악한 범죄로 인식되는 바, 최근의 발생을 증가는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우려를 불러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와 친족 성범죄자, 그리고 강간범 사이의 인구통계적 변인과 범죄관련 변인 등의 특성에 있어 차이 있음을 검증함으로써, 이들 범죄의 발생기제를 조금이라도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소아기호증과 아동치한범을 중심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유형을 고찰해 보고 그 개념을 정리하였다. 또한 친족 성범죄자와 강간범의 유형과 특성을 정리하였다. 통계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 대상 성범죄자와 친족 성범죄자는 강간범에 비해 연령이 높았으며, 결혼 경험이 더 많았다. 범죄관련 변인 중에서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와 친족 성범죄자가 강간범에 비해 최초 경찰 입건 연령이 더 높았으며, 단독 범행이 더 많았고, 흉기를 사용한 경우가 더 많았다. Static-99를 이용한 재범위험성 평가에서는 친족 성범죄자가 가장 낮은 재범위험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과제를 토의하였다.

주요어 : 소아기호증, 아동치한범, 인구통계적 변인, 범죄관련 변인, 강간범, 친족성범죄자

* 귀중한 조언을 해주신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교신저자: 이수정,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442-76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의의동 산 94-6
Tel: 031-249-9198, E-mail: suejung@hanmail.net

여러 가지 형태의 범죄 중에서도 성과 관련된 범죄는 어느 사회에서나 불안과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우리 사회도 예외일 수는 없다. 국내 성폭력범죄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요즘 날로 흉악해지고 있으며 발생 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06년도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발생 현황에서 다른 강력범죄의 발생률 변화는 지지부진 한 데 비해 강간 범죄만이 전년도에 비해 19.6% 나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경찰청 홈페이지, 2007). 이는 같은 기간 살인과 절도는 각기 1.1%, 2.1%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강도와 폭력은 오히려 각각 6.4%, 1.2% 감소한 데 비해 뚜렷한 증가추세를 입증해준다.

더욱이 국내 성폭력범죄의 발생 양상은 나날이 심각한 방향으로 변질되어 가는데, 이는 특히 성범죄로 인한 피해양상이 더 이상 성인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청소년과 아동에 대해서도 일반화되는 추세가 두드러진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한 해 강간 발생 건수는 13,108건으로 그 중 남성 피해자는 507명이고 여성 피해자는 12,403명이었다. 피해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15세 이하 강간 피해자는 1,665명으로 12.7%에 해당되었으며, 이중 12세 이하 아동 강간 피해자는 932명으로 전체의 약 7%에 해당되었고, 6세 이하 강간 피해자도 170명에 달했다(대검찰청, 2007). 국가청소년위원회의 2006년 성범죄자의 신상 및 범죄내용 제11차 공개에 의하면,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의 수가 412명으로 2001년 1차 공개(74명)에 비해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 이외에도 성범죄는 유독 재범률이 높다는 점도 성범죄의 발생양태를

더욱 심각한 것으로 만든다. 2006년에 발생한 사건을 예로 들자면, 아동을 상대로 한 강간 치상죄로 5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자가 4개월 만에 10명의 여학생을 또다시 성추행하였던 사건이나 4세 여아를 성추행한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11세 여자 초등학생을 성추행 하고 살인한 사건은 이 같은 재범율의 심각성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다.

재범률은 동종 재범 또는 이종 재범이냐에 따라, 그리고 재범의 추적 기간이나 성범죄의 유형, 암수 범죄의 가능성을 얼마나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다. 가장 일반화된 성범죄 재범율의 통계치는 성범죄로 복역을 한 성범죄자 중에서 약 10%에서 15% 정도가 출소 후 5년 이내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Hanson & Bussière, 1998; Hanson & Morton-Bourgon, 2004; 이수정, 김경옥, 2005).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의 재범율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 예상이 된다. 허나 이에 대해 아직까지 정확한 국내 통계를 접하기는 힘들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4년 성폭력범죄의 동종 재범자 수가 527명에서 2005년 672명, 2006년에는 757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한다(대검찰청, 2005, 2006, 2007). 특히 일부 성범죄자의 1년 이내 동종 재범률은 2002년 38.9%, 2003년 34.9%, 2004년 33.6%, 2005년 34.8%(법무부 보호국, 2006)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통계치는 일부의 상습적인 성범죄자들의 경우 다른 범죄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동종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매우 높음을 가정하게 한다. 이런 상습 성범죄자군에 해당하는 이들 중에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 및 가학적 성폭력이나 성적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성

범죄를 저지르는 고위험군도 포함된다(이수정, 김경옥, 2005). 따라서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은 성범죄의 근절이나 예방을 위한 형사사법정책의 입안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론적 배경

앞서 지적되었듯이, 최근에 들어 발생한 성적 살인이나 연쇄 성범죄 사건들은 일반인들에게는 경각심을 자극하였으며, 행정당국에는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이나 형사사법적 대책을 마련하게 하였고, 학계에는 학문적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성범죄자들에 대하여 시설 내 구금제도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다(이수정, 전주희, 2007). 그러나 구금에 이르는 성범죄자들은 소수에 제한될 뿐 대부분의 성범죄자들은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지 않고 집행유예나 가석방, 보호관찰 등과 같은 사회 내 처분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이웃으로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렇게 사회 내에서 생활하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감독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 같은 사회 내 처우의 한 가지 방안이 바로 2008년도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인 「성범죄자 위치추적제도」이다.

성범죄자들의 재범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특성과 범죄 동기를 구분(Robertiello & Terry, 2007)하여 성범죄자 유형에 따른 적절한 처우가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성범죄자들의 유형 분류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범죄자들의 특성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관련된 정보 등을 아우를 수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Robertiello & Terry, 2007). 즉 성

범죄자의 행동에 기초가 되는 내적 특성과 상황적 특성을 이해하는 길만이 미래 행동의 예측 및 통제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 사법제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성범죄자의 유형 분류는 크게 네 가지 기준으로 나뉠 수 있다. 피해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자’와 ‘성인 대상 성범죄자’, 가해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청소년 성범죄자’와 ‘성인 성범죄자’, 피해자/가해자 관계를 기준으로 ‘면식 성범죄자’와 ‘비면식 성범죄자’, 그리고 범죄 반복성을 기준으로 ‘초범 성범죄자’와 ‘재범 성범죄자’로 나뉜다. 이는 성범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양형인자를 토대로 한 것인데(참조, 양형위원회,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러한 유형 분류에 따른 국내 성범죄자들의 특성이나 유형 간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존재치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현행법제에 근거한 유형 분류가 과연 실증적으로도 차이를 야기하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이를 위하여 기존 문헌에서 제시되고 있는 성범죄자들의 유형 분류와 각 유형별 특성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유형과 개념을 정리해 보았다. 이러한 작업은 여러 용어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개념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특성을 더 정확히 이해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친족 성범죄자와 강간범에 대한 특성도 비교하여 보았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개념 및 유형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흔히 “아동치한범

(child molester)”이나 “소아기호증자(pedophile)”로 불린다. 소아기호증(pedophilia)은 보통 임상전문가나 심리학자들에 의해 임상적으로 진단된다.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4판(DSM-IV)(APA, 1994/1995)의 진단 기준에 따르면, 소아기호증은 “사춘기 이전의 소아나 소아들(보통 13세 이하)을 상대로 한 성행위를 중심으로 성적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며,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DSM-IV, p. 683)되는 조건으로 정의된다. 소아기호증자들은 이러한 공상, 성적 충동이나 행동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수반되고, 사회적, 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한 삶의 영역에서 장애를 초래한다. 일반적으로 소아기호증으로 진단되려면 적어도 나이가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성적 대상자 보다 적어도 5세 이상 연상이어야 한다(APA, 1994/1995).

소아기호증을 더 구체적 유형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다양하다(Abel & Harlow, 2001). 첫 번째 기준은 피해자의 성별에 따른 구분이다. 어떤 이들은 남아만 선호하거나 여아만 선호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남아, 여아 모두에게 매력을 느끼는 소아기호증 환자들도 있다. 소아기호를 구분하는 두 번째 기준은 소아에게만 매력을 느끼는 폐쇄적 유형과 소아와 성인 모두에게 매력을 느끼는 비폐쇄적 유형으로 나뉜다. Abel과 Harlow의 연구에서 2,429명의 남성 소아기호증 피험자들 중 단지 7%만이 소아에게만 현저하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폐쇄적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세 번째로는 피해자와 가해자간 관계가 기준이 되는데, 가족(친족)에게만 국한되는 유형과 그렇지 않은 자들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소아기호 성범죄자들은 성적 매력이 자신의 친자식, 의붓자식, 친지에 국한되기도 한다. 미국 연방 통계

자료에 의하면, 모든 성범죄자의 27%는 자신의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행위를 저질렀다(Snyder, 2000). 이들의 50%는 6세 이하의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42%는 6세~11세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Abel과 Harlow(2001)의 연구에서 아동치한범의 68%는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학대를 하였으며, 30%는 의붓자식이나 입양자식을 대상으로, 19%는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친자식을 대상으로, 18%는 조카나 질녀, 그리고 5%는 손자 또는 손녀를 대상으로 성학대를 하였다. 네 번째 기준은 자신들의 성행위에 소아를 개입시키는 방법으로 포르노그래피나 컴퓨터(인터넷)를 이용하느냐는 것이다.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없이 인터넷을 통해 얻은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보고 자위행위를 하는 유형과 아동과 채팅을 통해 성욕을 만족시키는 유형, 인터넷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직접 아동과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유형,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다른 소아기호증을 가진 사람과 접촉하여 스와핑을 즐기는 유형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앞의 네 가지 유형 모두를 시도하는 유형이 있다(Hall & Hall, 2007). 미국에서 인터넷 아동 포르노그래피 소유로 구속된 사람들의 76%가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된다(Kim, 2004).

일반적으로 소아기호증은 아동치한과 혼용되어 사용된다. 그러나 엄밀히 정의하자면, 아동치한범과 소아기호증자는 똑같은 개념이라 할 수 없다. 모든 소아기호증자는 아동치한범이지만, 모든 아동치한범이 소아기호증자라 볼 수는 없다. 즉 엄밀한 의미로 소아기호증이란 성인보다는 소아에게서 분명한 성적 선호를 보인다는 점에서 단순히 범죄의 결과로

서 피해자가 아동인 성범죄자(Non-pedophilic child molesters)와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치한은 임상적 진단 개념이 아니며, 소아기호증과 동의어로 사용될 필요는 없다(Hall & Hall, 2007). 아동치한범은 소아기호증자 보다 좀 더 광범위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치한범은 피해 아동보다 적어도 5세 이상 연상이며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아동에 대해 성적 행위를 하는 자로 정의내릴 수 있다(Hall & Hall, 2007). 예를 들어서 13세 아이가 8세 아이를 성적으로 접촉했다면 아동치한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소아기호증으로 진단되지는 않는다.

아동치한범은 성적 일탈 행위에 대한 동기가 무엇이나에 따라 고착형과 퇴행형의 가장 기본적인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고착형(fixed child molester)은 지속적으로 성적인 매력을 아동에게만 느끼는 유형이며, 퇴행형(regressed child molester)은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아이들에게 성적인 만족을 느끼는 유형이다(Holmes & Holmes, 2002). 고착형은 청소년 시기부터 아동에 대한 성적 기호를 보일 수도 있으며,

성인 시기에 나이에 적합한 상대와의 성적 관계를 갖지 못하고 보통 소아기호증으로 진단될 가능성이 있다. 퇴행형은 자신의 삶에서 어떤 스트레스 요인이 발생하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적 만족을 가지려 한다. 이러한 유형은 실업이나 결혼 생활의 불화, 또는 약물 사용 등과 같은 상황적 요인뿐만 아니라, 불안, 외로움, 정신적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감정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다(Holmes & Holmes, 2002).

고착형-퇴행형 이분법적 유형 분류를 기초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에서는 이 이분법적 유형을 확대하였다(표 1). “퇴행적” 또는 상황적(situational) 유형은 퇴행형(regressed), 도덕적 무차별형(morally indiscriminate), 성적 무차별형(sexually indiscriminate), 무기력형(inadequate)이 있다. “고착적” 또는 아동선호형(preferential)은 유혹형(seductive), 고착형(fixated), 그리고 가학형(sadistic)이 있다(Robertiello & Terry, 2007). 아동치한범들의 성격 특성을 살펴보면, 아동치한범들은 일반적으로 열등감, 고독감을 경험하

표 1. 아동치한범의 FBI 유형

유형	특성
상황형 범죄자	
퇴행형	정서 처리 기술의 미숙, 아동을 성인 관계의 대체물로 여기며 성적인 학대
도덕적 무차별형	특별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적매력을 가지기 보다는 물색하다보니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성적 무차별형	자신의 성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아이들을 이용, 성적인 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음
무기력형	사회 적응 능력 부족, 낮은 자기존중감, 단순히 성적 배출구로서 아이들 이용
아동선호형	
유혹형	아동과의 관계를 얻기 위해 애정, 사랑, 선물 등을 제공하여 유혹
고착형	심리성적 발달 미숙, 강박적으로 아이들에 매력을 느낌, 아이들로부터 애정을 추구함
가학형	공격적이고 폭력에 의해 성적 욕구를 분출하기 원함, 모르는 피해자가 대상, 매우 위험함

고 자기존중감이 낮고, 정서적으로 미성숙성을 보인다(Hall & Hall, 2007). 또한 이들은 자신의 주장을 잘 하지 못하고 수동적 공격성이나 적대감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연령에 적합한 성숙한 대인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보인다(Gudjonsson & Sigurdsson, 2000).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들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결과적으로 부정이나 인지왜곡, 합리화와 같은 자기 방어기제를 더욱 많이 사용하게 된다(Hall & Hall, 2007). 이러한 감정 처리의 미숙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은 다른 성인과의 친밀감을 발전시키고 확고히 하는데 방해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친족 성범죄자

성범죄자의 하위유형을 고려할 때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피해자의 연령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피해자와의 관계이다. ‘친족 성범죄자(incest sex offender)’는 일반적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하위 유형으로 포함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친족 성범죄의 피해자의 대부분은 아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한 연구는 상당한 양에 이르나 이에 비해 친족 성범죄자들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다(Hanson & Bussière, 1998). Quinsey, Lalumière, Rice와 Harris(1995)는 자신들의 성범죄자 재범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1962년과 1981년 사이에 친족 성범죄에 대한 연구는 단지 4건(영국 3건, 캘리포니아 1건)에 불과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렇게 제한된 수의 친족 성범죄자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다(Quinsey et al., 1995).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

하고 친족 대상 성범죄자들의 특성을 요약하여 보자면 다음과 같다.

친족 외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미혼이거나 혼자 살며, 자신과 적합한 연령의 상대와 친밀한 성적 관계를 거의 가져보지 못하는 특성을 보이는 반면에, 친족 성범죄자는 결혼을 했으며, 사회적으로 적절한 관계를 맺을 능력이 되고, 가족과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Miner & Dwyer, 1997). 친족 성범죄자들은 또한 다른 성범죄자들에 비해 범행 시 평균 나이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Lung & Huang, 2004). Hanson(2001)에 의하면, 강간범, 친족 외 아동 대상 성범죄자, 그리고 친족 성범죄자 간에 연령 비교에서 친족 성범죄자가 가장 나이가 많았고, 그 다음이 친족 외 아동 대상 성범죄자, 그리고 가장 연령이 낮았던 집단은 강간범이었다고 한다. 또한 친족 대상 성범죄자들은 다른 성범죄자들에 비해서 학력이 더 낮았고, 약물이나 알코올 등의 문제가 많았고, 다른 종류의 범죄력은 더 적었다(Lung & Huang, 2004).

강간범(성인 대상 성범죄자)

강간범들(여성을 대상으로 강간을 저지른 남성 범죄자)을 하나의 동질적 집단이라 간주하기에는 여러 모로 어려움이 많다(Robertiello & Terry, 2007).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공통점은 있는데, 그것은 여성에 대한 부정적 견해, 강간 통념을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남성적 역할을 과도하게 과시하는 경향 등을 강간범들의 유사점이라 할 수 있다(Scully, 1990). 이러한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강간범들은 여러 다양한 집단 구성을 보인다.

Robertiello와 Terry(2007)에 의하면, 강간범들

을 일반적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 보상형(compensatory)은 성적 요구 충족이 일차적 동기이며 성적 만족을 얻는 데 필요한 만큼의 폭력만을 사용하며,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고, 동년배의 대상을 고르는 경향이 있다. 가학형(Sadistic)은 성적인 만족을 희생자의 고통이나 공포를 통해서 충족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이는 성적 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통제형(control)은 매우 공격적이고 희생자를 힘을 통해 통제하려는 성향을 보이며,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알코올이나 약물을 섭취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기회주의형(opportunistic)은 충동에 의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다른 형태의 범죄를 저지르는 와중에 무계획적으로 강간을 저지룰 수 있고, 희생자의 저항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분노를 보이지 않는다.

위의 유형 분류에도 불구하고 강간범들의 범죄 이력이나 개인 이력은 매우 개별적이고, 그들의 일탈적 행동을 지지하는 태도나 신념 또한 매우 다양하여, 이를 유형으로 구별 짓기는 쉽지 않다(Gordon & Porporino, 1990). 그러나 강간범과 아동치한범 사이에는 어느 정도 구별되는 특성들이 발견된다. Salter(1988)에 의하면, 강간범은 아동치한범보다 더 분노와 자기주장적 문제를 더 많이 가지는 경향이 있으며, 강간범은 아동치한범에 비해 범죄를 저지를 시에 알코올이나 약물에 취한 경우가 더 많이 보고되며, 더 기회주의적 범행을 저지르고, 성격 장애로 진단되는 경우가 더 많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최대 50%의 강간범이 범죄 행위 시 알코올이나 약물에 취해 있었다고 보고된다(Gudjonsson & Sigurdsson, 2000). 반면에 아동치한범은 불안이나 우울증을 보이는 경우가 더 많고, 더 계획된 범행을 하고, 그들

은 더 일탈적인 성적 환상을 보고한다(Salter, 1988).

강간범과 아동치한범 사이에는 사회적 기술(social skill)과 성지식(sexual knowledge)의 부족을 포함한 성격적 특성을 공유하는 점도 있는데, 두 집단 모두 “수동적 공격성”을 보인다고 보고된다(Gudjonsson & Sigurdsson, 2000). 그러나 Segal과 Marshall(1985)은 아동치한범이 강간범에 비해 더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Gudjonsson과 Sigurdsson(2000)의 연구에서는 강간범과 아동치한범 모두 폭력범죄자들에 비해 더 내성적인 성향을 보였으나, 아동치한범이 강간범에 비해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 욕구가 더 높았으며, 경찰에게 자백하려는 내적 욕구가 더 강했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 보자면 강간범은 아동치한범에 비해 더 연령이 낮았다(Blumenthal, Gudjonsson, & Burns, 1999; Craissati & Beech, 2004). 남성 아동치한범의 평균 연령은 36세에서 40세 사이였다. 그러나 강간범의 75%는 30세 이하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아동치한범의 75%는 30세 이상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나이가 많은 아동치한범(50세 이상)일수록 더 미성숙한 아동(10세 또는 그 이하)을 찾고, 나이가 적은 아동치한범(40세 이하)일수록 12세-13세 사이의 아동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Bartol & Bartol, 2004).

결혼 여부를 비교해보면, 강간범이 아동치한범에 비해 미혼인 경우가 더 많았는데, 아동치한범이 강간범에 비해 성인 시기에 1년 이상의 동거(결혼 포함)의 경우가 더 많았으며, 더 늦은 나이에 처음으로 성적 접촉을 가졌다. 피해자와의 관계를 보면 강간범은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더 많은 반면,

아동치한범은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많다고 보고된다(Craissati & Beech, 2004).

Dhawan과 Marshall(1996)의 연구에 의하면, 강간범이나 아동치한범 모두 높은 수준의 성적 학대 경험이 있음을 보고했는데, Craissati와 Beech(2004)의 연구에서는 아동치한범이 강간범에 비해 조금 더 많은 아동기 성적 학대 경험을 지닌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성폭력 행위 시 공격적 행위나 강압 행위는 강간범이 아동치한범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을 보인다고 한다(Bard et al., 1987).

연구문제

본 연구는 성범죄자의 유형에 따라 여러 변인들 상에서 차이가 있음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성범죄자를 강간범, 친족 외 아동 대상 성범죄자, 그리고 친족 성범죄자인 세 유형으로 나누어 인구통계적 변인들과 범죄관련 변인들 사이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첫째, 성범죄자 유형별 인구통계적 변인들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 보았다. 특히 성범죄자들의 연령, 결혼 여부, 직업, 그리고 최종 학력에서 세 집단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두 번째로 성범죄자 유형별 범죄 관련 변인들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범죄 관련 변인에는 최초 경찰 입건 연령, 모든 범법 건수, 소년원 경력, 공범 여부, 합의 여부, 흉기 사용 여부, 성범죄 전과력, 이전 폭력 전과력 그리고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Static-99)상의 위험성 수준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과 관계되어 있는 인구통계적 변인들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재범 위험성 및 범죄성과 관련된 범죄관련 변인도 성범죄자 유형별로 차이를

보일 것이라 가정하였다. 그러나 국내 성범죄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와 같은 하위유형에 대한 차이분석은 실시된 적이 없었기에 따로 구체적인 가설을 설정하지는 않았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는 조사 장소에 따라 크게 두 집단으로 나뉜다. 한 집단은 교도소 수감자로서 전국에 분포한 교도소 중 성범죄자가 가장 많이 수감되어 있는 12개소를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두 번째 집단은 성범죄로 인하여 보호관찰 감독을 받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서울·경기지역에 있는 8개 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총 12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교도소 대상자는 68명이고 보호관찰소 대상자는 53명이다.

이들을 ‘친족외 아동 대상 성범죄자’, ‘친족 성범죄자’, 그리고 ‘강간범’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친족외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소아기호증 진단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친족이 아닌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로 정의한다. 그리고 ‘친족 성범죄자’는 피해자가 친족의 범위에 있는 대상자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강간범’은 13세 이상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간, 강간미수, 강도강간, 준강간, 강간치상 등의 강간죄를 범한 범죄자를 말한다. 총 121명 중에서 친족외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21명(17.4%), 친족 성범죄자는 16명(13.2%), 그리고 강간범은 84명(69.4%)이다. 총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만 36.11($SD = 11.56$)세이며 모두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성이다. 피해자

의 성별에 따라 남성 피해자가 있는 대상자는 2명이고 그 외 119명의 대상자의 피해자는 여성이다.

강간범의 피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는 사람은 20명(23.8%), 범행 몇 시간 전에 알게 된 사람은 18명(21.4%), 모르는 사람은 46명(54.8%)이다. 친족외 아동 대상 성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는 사람은 7명(33.3%), 범행 몇 시간 전에 알게 된 사람은 4명(19%), 모르는 사람은 10명(47.6%)이다.

측정도구

본 연구는 각 교도소와 보호관찰소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되었다. 모든 연구 대상자들은 면담에 참가하기로 동의하고 동시에 연구자들이 자신의 개인기록(교도소와 보호관찰소의 공식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한 조사대상자문서로 작성된 정보열람 동의서에 서명함에 한해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자들은 연구 대상자들의 공식 개인기록을 열람한 후에 각 대상자들과 일대일 면담이 진행되었다. 개인 면담을 통하여 사건 내용의 세부 정보를 얻었고, 공식 개인 기록에 빠져있는 개인적 정보와 범죄 전과력 및 소년 전과들에 대한 정보를 보충하였다. 나머지는 교도소와 보호관찰소에 보관되어 있는 공식기록 문서를 중심으로 정보를 수집하였다. 조사대상자들에게는 모든 면담이 끝나고 면담에 참가한 보상으로 약간의 보수가 주어졌다.

인구통계적 변인과 범죄관련 변인

공식 개인기록 검토와 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변인들에 대해 검증하였다: 범죄자의 연령, 최초 경찰 입건 연령, 모든 범법 건수, 최

종 학력(고졸, 고중퇴 이하), 기소 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공범 여부, 흉기 사용 여부, 직업 여부, 소년원 경력, 성범죄 전과 여부, 폭력 전과 여부. 피해자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남성 피해자를 가진 대상자가 극소수이므로 변인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 변인도 친족 성범죄자가 포함되어 차이를 조사할 의미가 없으므로 변인에서 제외되었다.

재범위험성 평가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위험성평가 분야에서 공신력을 획득한 Static-99 (Hanson & Thornton, 1999; Harris, Phenix, Hanson, & Thornton, 2003)를 사용하였다. 이 평가도구는 남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재범 가능성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범죄자의 연령이나 이전 전과력과 같은 고정적인 범죄관련 변인들을 재범 평가의 지표로서 사용한다. 구체적 문항을 살펴보자면 범죄자의 연령, 미혼 여부, 이전의 성범죄 전력 및 이전 비접촉 성범죄 전력, 폭력 범죄 전력, 피해자의 성별,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점수의 범위는 0점-12점이고, Static-99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각 개인은 총 점수에 따라 네 개의 위험 수준으로 평가된다(0-1 = 하; 2-3 = 중하; 4-5 = 중상; 6이상 = 상). Hanson과 Thornton (1999)이 보고한 Static-99와 성범죄 재범률 사이의 상관관계는 .33이고 ROC(receiver operating curve analysis)분석에서 산출된 AUC(area under curve)는 .71이다.

결 과

총 대상자에 대한 기술통계

총 대상자(121명)의 최초 경찰 입건 연령의 평균은 23.77세($SD = 10.41$)이고, 모든 범법 건수의 평균은 4.49회($SD = 4.60$)이었다. 성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88명(72.7%)이고 성범죄를 제외한 다른 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대상자는 66명(54.5%)이었다. 학력, 직업, 혼인 여부에 관한 빈도와 백분율(%)을 표 2에 제시하였다. Static-99의 평균 점수는 4.02($SD = 1.93$)이며, 위험성 수준별 빈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총 대상자에 대한 기술통계

변인	빈도	%
학력		
고졸 이상	69	57.0
고졸미 이하	52	43.0
직업 여부		
무직	26	21.5
직업 있음	74	61.2
일용직노동	21	17.4
혼인 여부		
미혼	64	52.9
그 외	57	47.1
Static-99 수준별		
하	10	8.3
중하	46	38.0
중상	38	31.4
상	27	22.3

인구통계적 변인에 대한 결과

강간범 집단과 친족 외 아동 대상 성범죄자 집단, 그리고 친족 성범죄자 집단 간에 범죄자의 연령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One-Way ANOVA)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세 집단 간에 연령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2,118) = 20.18, p = .000$. Scheffé 사후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강간범($M=32.35, SD=8.71$)과 친족 외 아동 대상 성범죄자($M=42.62, SD=14.06$) 사이와 강간범과 친족 성범죄자($M=47.31, SD=10.64$)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5$). 즉 강간범은 친족 외 아동 대상 성범죄자와 친족 성범죄자에 비해 더 연령이 낮았다. 친족 외 아동 대상 성범죄자와 친족 성범죄자 사이의 연령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결혼 여부, 최종 학력, 그리고 직업 분류 변인들에 대한 χ^2 독립성 검증을 통해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성범죄자 유형과 결혼 여부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2, N=121)=13.45, p < .001$. 강간범은 미혼인 경우가 그 외 상태(결혼, 동거, 이혼, 사별을 포함한 상태)인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반면, 친족 성범죄자들은 미혼인 경우가

표 3. 성범죄자 유형별 결혼 여부 비교

	강간범	친족 외 아동 대상 성범죄자	친족 성범죄자
미혼	52(61.9%)	10(47.6%)	2(12.5%)
그 외	32(38.1%)	11(52.4%)	14(87.5%)
전체	84(100%)	21(100%)	16(100%)

표 4. 성범죄자 유형별 최종 학력과 직업 분류 비교

	강간범	친족 외 아동 대상 성범죄자	친족 성범죄자
최종학력			
고졸이상	52(47.9%)	12(57.1%)	5(31.3%)
고중퇴 이하	32(38.1%)	9(42.9%)	11(68.8%)
직업분류			
무직	17(20.2%)	8(38.1%)	1(6.3%)
직업 있음	55(65.5%)	8(38.1%)	11(68.8%)
일용직 노동	12(14.3%)	5(23.8%)	4(25.0%)

그 외 상태인 경우보다 훨씬 더 많다. 친족 외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세 집단 간에 최종 학력과 직업 분류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각각, $\chi^2(2, N=121)=5.15$, $\chi^2(4, N=121)=8.22$). 친족 성범죄자에서 고졸 이상 비율보다 고등학교 중퇴 이하 집단의 비율이 더 많았지만, 다른 두 집단에서는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직업 분류상에서는 친족 성범죄자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무직인 비율이 가장 낮았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표 4 참조).

범죄 관련 변인에 대한 결과

9개 범죄 관련 변인들에 대해 강간범, 친족 외 아동 대상 성범죄자, 그리고 친족 성범죄자 사이의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우선 세 집단 간 모든 범법 건수와 최초 경찰 입건 연령에 대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초 경찰 입건 연령에서 세 집단 간 유의미한 차

표 5. 최초 경찰 입건 연령과 모든 범법 건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강간범	친족 외 아동 대상 성범죄자	친족 성범죄자
최초경찰	21.18	28.24	31.50
입건연령	(6.22)	(12.57)	(17.70)
모든 범법	4.64	4.38	3.81
행위 건수	(4.57)	(4.57)	(5.04)

주. ()은 표준편차

이가 있었다, $F(2,118) = 10.34$, $p=.000$. Scheffé 사후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강간범이 친족 외 아동 대상 성범죄자와 친족 성범죄자에 비해 더 낮은 연령을 보였다. 그러나 친족 외 아동 대상 성범죄자와 친족 성범죄자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모든 범법행위의 건수에서는 세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5).

여러 범죄 관련 변인들에 대해 세 집단 간 χ^2 독립성 검증을 실시하였다(표 6과 표 7 참조). 표 6에서는 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들을 제시하였다.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범죄 관련 변인은 공범 여부, 흉기 사용 여부, 그리고 Static-99 분류 변인이다.

대체적으로 친족 외 아동 대상 성범죄자와 친족 성범죄자는 대부분이 단독 범행을 하지만, 강간범은 공범의 비율도 31%에 달한다, $\chi^2(2, N=121)=9.44$, $p<.01$. 범행 시 흉기 사용 여부에 있어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즉 친족 외 아동 대상 성범죄자와 친족 성범죄자는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비율이 훨씬 많지만, 강간범의 경우 흉기 사용이 36.9%에 달한다,

표 6. 성범죄자 유형별 범죄 관련 변인들의 비교(1)

	강간범	친족 외 아동 대상 성범죄자	친족 성범죄자	
	빈도(%)	빈도(%)	빈도(%)	
공범 여부				$\chi^2(2, N=121)=9.44, p<.01$
있음	26(31.0%)	1(4.8%)	1(6.3%)	
없음	58(69.0%)	20(95.2%)	15(93.8%)	
흥기사용여부				$\chi^2(2, N=121)=9.37, p<.01$
없음	53(63.1%)	20(95.2%)	13(81.3%)	
있음	31(36.9%)	1(4.8%)	3(18.8%)	
Static-99				$\chi^2(6, N=121)=49.43, p<.001$
하	1(1.2%)	1(4.8%)	8(50.0%)	
중하	29(34.5%)	10(47.6%)	7(43.8%)	
중상	30(35.7%)	7(33.3%)	1(6.3%)	
상	24(28.6%)	3(14.3%)	0(0%)	

표 7. 성범죄자 유형별 범죄 관련 변인들의 비교(2)

	강간범	친족 외 아동 대상 성범죄자	친족 성범죄자	
	빈도(%)	빈도(%)	빈도(%)	
합의 여부				$\chi^2(2, N=121)=1.11$
합의	33(39.8%)	9(42.9%)	4(26.7%)	
미합의	50(60.2%)	12(57.1%)	11(73.3%)	
소년원 경력				$\chi^2(2, N=121)=.32$
없음	71(87.7%)	14(87.5%)	13(92.9%)	
있음	10(12.3%)	2(12.5%)	1(7.1%)	
성범죄전과				$\chi^2(2, N=121)=.991$
없음	61(73.5%)	14(66.7%)	13(81.3%)	
있음	22(26.5%)	7(33.3%)	3(18.8%)	
폭력범죄 전과				$\chi^2(2, N=121)=4.33$
없음	33(39.3%)	13(61.9%)	9(56.3%)	
있음	51(60.7%)	8(38.1%)	7(43.8%)	

$\chi^2(2, N=121)=9.37, p<.01$. 재범의 위험성을 측정하는 도구인 Static-99의 평가 결과, 친족 성범죄자는 수준 상으로 평가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나, 강간범은 28.6%가 높은 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 전체적으로 강간범이 높은 수준의 재범 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 $\chi^2(6, N=121)=49.43, p<.001$.

마지막으로 범죄 관련 변인들 중에서 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변인들을 제시하였다(표 7 참조). 세 집단 간에 합의 여부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소년원 경력이나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가 있는지에 대한 차이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전 성범죄 전력은 세 집단 모두 초범자가 더 많았다. 성범죄가 아닌 폭력범죄 유죄 판결 전력에 대한 비교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친족 외 아동 대상 성범죄자와 친족 성범죄자의 대부분이 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반면에 강간범은 반대로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비율이 더 많았다. 그러나 결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강간범과 친족 외 아동 대상 성범죄자, 그리고 친족 성범죄자의 유형별 차이가 있는 살펴 보았다. 전반적으로 국외 선행연구에서 보고 되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다. 우선 연령에 대한 비교에서는 국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강간범의 연령이 가장 낮고 친족 외 아동 대상 성범죄자, 그리고 친족 성범죄자의 순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동 대상 성범죄자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범에 비해 높은 연령을 보이는 것은 어느 정도 보편적 특성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결혼 여부에 대한 부분은 친족 성범죄자가 친족 내 특히 함께 사는 가족 내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범죄자가 양부이든 친부이든 상관없이 결혼으로 맺어진 가정을 가졌을 가능성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강간범의 연령이 더 어리다는 점에서 결혼 경험을 할 기회가 더 적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강간범이 다른 유형에 비해 미혼의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이다.

직업의 분류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정보 제공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분류를 할 수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많은 조사대상자들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건축노동과 같은 불안정한 취업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나 그들이 자신의 직업적 안정성을 과장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즉 유흥업소에서 지속적인 기간 동안 취업을 한 상태가 아닌 취업 경험을 정규직의 형태로 보고하였을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

흥기 사용 여부에 대한 비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공격성의 차이를 보여주기에는 “흥기”라는 요인이 지나치게 단순화되었다고 생각한다. 폭력, 신체적인 강압이나 언어적 공격(폭언) 등과 같은 변인이 포함된다면, 성범죄자 유형 간에 더욱 정확한 공격성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동종 재범 전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성범죄 전과에 대한 비교는 하였지만, 세부적으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이 이전에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

는지, 친족 성범죄자들이 이전에도 친족 성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실제적인 동종 재범 여부에 대한 비교는 이루어지지 못한 셈이다. 아울러 이전 범죄 전력에 대한 세부적인 비교를 할 수 없었다. 특히 소년원 경력이나 소년 전과에 대해서는 기록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조사에서는 문서기록 보다는 조사대상자의 진술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Static-99를 이용한 재범위험성 평가에서는 친족 외 아동 대상 성범죄자와 친족 성범죄자가 강간범에 비해 대체로 재범위험성이 낮게 나왔다. 아동치한범과 강간범의 재범률은 연구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주기도 한다(Hanson & Bussiere, 1998). 이러한 차이는 아동치한범의 하위 유형에 따라 매우 다른 재범률을 보여주기 때문이다(Bartosh, Garby, Lewis, & Gray, 2003). 다시 말해서, 친족 성범죄자는 가장 낮은 재범률을 보여주는 반면에 친족 외 아동치한범으로 남성 피해자를 가진 성범죄자가 가장 높은 재범률을 보이기 때문이다(Hanson, Steffy, & Guthrie, 1993).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에서(Prentky, Lee, Knight, & Ceree, 1997)는 아동치한범이 강간범에 비해 더 높은 재범률을 보이는데 반해 다른 연구(Hanson & Bussiere, 1998)에서는 강간범이 아동치한범보다 더 높은 재범률을 보인다. 이는 Prentky 등의 연구(1997)에서는 친족 성범죄자가 제외된 연구이며 Hanson과 Bussiere의 연구는 친족 성범죄자를 포함한 연구였다. 이는 친족 성범죄자에 대한 더 명확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다른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와의 관련성 연구를 더욱 타당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재범 추적을 통한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성범죄자의 유형은 예측의 정확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Bartosh, et al., 2003). 따라서 성범죄자의 특성을 적절하게 분류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유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 예측 변인은 성범죄자 유형별로 세부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Firestone, et al., 1999). 성범죄자의 유형을 구체화시키는 일은 세부 유형별 재범 예측 요인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되지 못한 변인들에 대한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하다. 성범죄자 유형별 어렸을 때의 학대 경험과 가정환경 요인들도 포함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Firestone et al, 1999).

앞서 지적했듯이 우리 사회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신상공개 제도의 확대 실시나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 제도의 시행(이수정, 전주희, 2007)과 같은 더 강력한 법적 처분이 요구되고 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어 재범이 방지되려면 성범죄자들의 특성에 맞는 차별적 처우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내 성범죄자들의 특성을 잘 분류하여 그들에게 적합한 구금 시설 내 또는 사회 내 처우가 실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그들의 특성을 가장 적절하게 구성화시키는 유형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제한점이 많은 연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성범죄자의 유형화를 진행하는데 시금석이 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경찰청 홈페이지 (2007). 5대범죄 발생, 검거 현황. http://www.police.go.kr/infodata/pds_07_totalpds_04_01.jsp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제11차 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 계도문.
- 대검찰청 (2005). 범죄분석.
- 대검찰청 (2006). 범죄분석.
- 대검찰청 (2007). 범죄분석.
- 법무부 보호국 (2006). 정책위원회 3차 회의 자료: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 대책. 미출판 자료.
- 양형위원회 (2007). 2007 양형위원회 연간보고서.
- 이석재 (1999). 강간통념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 131-148.
- 이수정, 김경옥 (2005). 성범죄 재범률에 관한 바른 이해와 재범 방지 대안 모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 83-100.
- 이수정, 전주희 (2007). 성범죄자의 위험유형별 처우 방안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 117-131.
- Abel, G. G. & Harlow, N. (2001). The Abel and Harlow child molestation prevention study. *The Stop Child Molestation Book*. Philadelphia, PA; Xlibris. <http://www.childmolestationprevention.org/pdfs/study.pdf>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7). *Fact sheet: pedophilia*. www.medem.com/index.cfm.
- APA(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5).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4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Fourth Edition(DSM-IV)]. 이근후 외 14명(역), 서울: 하나의학사(1994).
- Bard, L. A., Carter, D. L., Cerce, D., Knight, R. A., Rosenberg, R., & Schneider, B. (1987). A descriptive study of child molesters, development, clinical and criminal characteristics.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5, 203-220.
- Bartol, C. R., & Bartol, A. M. (2004). Chapter 10: Sexual offence. *Criminal Behavior: A Psychosocial Approach*. 7th Ed. New Jersey: Pearson Prentice Hall.
- Bartosh, D. L., Garby, T., Lewis, D., & Gray, S. (2003). Differences in the predictive validity of actuarial risk assessments in relation to sex offender type.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47, 422-438.
- Blumenthal, S., Gudjonsson, G., & Burns, J. (1999). Cognitive distortions and blame attribution in sex offenders against adults and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23, 129-143.
- California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2003). *Sex offender statics of December 2, 2003*. <http://caag.state.ca.us/megan/pdf/0312chart.pdf>.
- Craissati, J., & Beech, A. (2004). The characteristics of a geographical sample of convicted rapists: Sexual victimization and compliance in comparison to child molest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9, 371-388.
- Dhawan, S., & Marshall, W. L. (1996). Sexual abuse histories of sexual offender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8, 7-15.
- Firestone, P., Bradford, J. M., McCoy, M., Greenberg, D. M., Larose, M. R., & Curry, S. (1999). Prediction of recidivism in incest

- offend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4, 511-531.
- Gordon, A., & Porporino, F. J. (1990). *Managing the treatment of sex offender: A Canadian perspective. Research report, B-05*. Ottawa: Correctional Service of Canada.
- Gudjonsson, G. H. & Sigurdsson, J. F. (2000). Difference and similarities and between violent. *Child Abuse & Neglect*, 24, 363-372.
- Hall, R. C. W. & Hall, R. C. W. (2007). A profile of pedophilia: Definition, characteristics of offenders, recidivism, treatment outcomes, and forensic issues. *Mayo Clinic Proceeding*, 82, 457-471.
- Hanson, R. K., & Bussière, M. T. (1998). Predicting relapse: A meta-analysis of sexual offender recidivism stud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 348-362.
- Hanson, R. K., & Morton-Bourgon, K. (2004). Predictors of sexual recidivism: An updated meta-analysis. *Public Safety and Emergency Preparedness Canada*.
- Hanson, R. K., Steffy, R. A., & Guthrie, R. (1993). Long term recidivism of child molest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646-652.
- Hanson, R. K., & Thornton, D. (1999). *Static-99: Improving actuarial risk assessments for sex offenders. User Report 99-02*. Ottawa: Department of the Solicitor General of Canada.
- Harris, A., Phenix, A., Hanson, R. K., & Thornton, D. (2003). *Static-99 Coding Rules Revised-2003*. Corrections Directorate Solicitor General Canada.
- Holmes, R. M., & Holmes, S. T. (2002). *Profiling Violent Crimes: An Investigation Tool*. 3rd Ed. London: Sage Publications.
- Kim, C. (2004). *From fantasy to reality: The link between viewing child pornography and molesting children. Child Sexual Exploitation*. National District Attorneys Association. www.ndaa.org
- Miner, M. H., & Dwyer, S. M. (1997). The psychosocial development of sex offenders: Different between exhibitionists, child molesters, and incest offender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41, 36-44.
- Prentky, R. A., Lee, A. F., Knight, R. A. & Ceree, D. (1997). Recidivism rates among child molesters and rapists: A methodological analysis. *Law and Human Behavior*, 21, 635-659.
- Quinsey, V. L., Lalumière, M. L., Rice, M. E., & Harris, G. T. (1995). Predicting sexual offenders. In J. C. Campbell(Ed.), *Assesing dangerousness: Violence by sexual offenders, batterers, and child abusers*. Thousand Oaks, CA: Sage.
- Robertiello, G., & Terry, K. J. (2007). Can we profile sex offenders? A review of sex offender typologie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2, 508-518.
- Salter, A. C. (1988). *Treating child sex offenders and victims. A practical guide*. London: Sage Publications.
- Segal, Z. V., & Marshall, W. L. (1985). Heterosexual social skills in a population of rapists and child molesters. *Journal of*

-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55-63.
- Snyder, H. N. (2000). *Sexual Assault of Young Children as Reported to Law Enforcement: Victim, Incident, and Offender Characteristic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NCJ 182990.
- Scully, D. (1990). *Understanding sexual violence: A study of convicted rapists*. Cambridge: Unwin Hyman.
- 1차원고접수: 2008. 5. 15.
수정원고접수: 2008. 6. 10.
최종게재결정: 2008. 6. 17.

**Comparison Between Pedophilic Sex Offenders,
Incest Sex Offenders and Rapists:
Focusing on Demographic and Criminogenic Variables**

Ryeo-Jin Ko

Soo Jung Lee

Criminological Psychology, Kyonggi University

Recently, sex offences against children are sharply increasing in Korea. This study reviewed the various concepts related to this matter, specifically pedophilia. Based on empirical data, comparisons were made between pedophilic sex offenders and incest sex offenders and rapists general sex offenders. Pedophilic sex offenders were defined by victims' age under 13. Demographic and criminogenic variables presented pedophilic sex offenders and incest sex offenders were older than rapists and more members got marriage experiences. Pedophilic sex offenders' age when they start crime was higher than that of rapists and they commit crime by themselves and they use weapon during crime. Incest sex offenders acquired lower score on Static-99, a sex offender risk assessment tool followed by Pedophilic sex offenders and rapists.

Key words : pedophilia, rapists, demographic variables, criminogenic variables, incest